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즉시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종전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퇴사일	전화번호	
현재 소속회사	회사명(대표자)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건설업종(면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입사일	전화번호		

기술경력

사업기간(착공~준공)	참여사업명		
참여기간(시작~종료)	발주자(칭)		
공사종류	공사(용역)금액(백만원)	직무분야	전문분야
공사(용역)개요(150자 이내 빈칸 포함)	담당업무	책임정도	직위
적용 공법	적용 용·복합건설기술	적용 신기술 등	시설물 종류
~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본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수수료
첨부서류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 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합니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합니다)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른 수수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신고인(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타인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속회사 및 기술경력 작성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대리인이 신고 시 실명확인을 위해 아래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	-----------------	------	-----